

보도참고자료

- 혁신금융
- 포용금융
- 신뢰금융

보도 배포 후 즉시	배포 2019.12.21.(토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·			
	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최 치 연(044-200-2190)		김 민 수 사무관 (044-200-2192)
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장 도 환(044-215-7630)		류 정 금 사무관 (044-215-7636)
## OL TI	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강 원 준(02-2100-7716)	FL FL T	신 현 주 사무관 (02-2100-7719)
ૻ 책 임 자	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 창 완(02-2110-3661)	담 당 자	신 동 환 검사/최 초 사무관 (02-2110-3668/02-2110-4244)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정 하 늘(044-203-4880)		박 근 형 사무관 (044-203-4884)
	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성 기 철(02-2100-2910)		홍 수 정 사무관 (02-2100-29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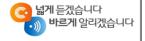
제 목: 이란 다야니家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결과

- □ 2019년 12월 20일, 다야니(Dayyani)家 대(對)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, 영국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 - 정부는,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 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, 한-이란투자 보장협정상 중재(ISD*)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,
 - * ISD: 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

- 영국고등법원은 **한-이란 투자보장협정**상 '**투자**' 및 '**투자자**'의 개념을 매우 **광범위**하게 해석, 다야니家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하여,
- **다야니家**가 **한국 정부**를 **상대**로 한-이란 투자보장협정상 **중재** (ISD)를 **제기**할 수 있다고 **판단**하였습니다.
- 결과적으로, 다야니(Dayyani)家 대(對) 대한민국 사건의 **중재판정** (2018년 6월 5일)이 **확정**되었습니다.
- □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**긴급 관계부처*** 회의를 개최하여 **향후**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,
 - * 국무조정실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법무부, 산업부, 금융위
 -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**판결문**을 **면밀**하게 **분석**하고 **필요한 후속조치**를 취할 예정입니다.
- □ 모든 **절차**가 **종료**된 이후,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**상세**한 **내용**을 **공개**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- < 붙임 > 다야니 ISD 사건 내용, 중재 과정, 취소소송 수행 과정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붙임 다야니 ISD 사건, 중재, 취소소송수행 과정

1. 사건 내용

□ 2000년 1월, 부실채권정리기금(캠코)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 (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 변경) 부실채권 인수 ○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채권 중 일부 출자전환하여 주식 보유 □ 2005년~2008년, 제1차·제2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진행 □ 2009년 11월, 제3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추진(주채권은행: 우리은행) ○ 2010년 4월, 채권단은 엔텍합*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* 다야니家가 대주주인 이란 가전 회사 □ 2010년 11월, 채권단과 D&A(다야니家가 설립한 싱가폴 특수목적회사)는 매매계약 체결(총 매매대금: 5,778억원) ○ D&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 □ 2010년 12월, 채권단은 투자확약서(LOC) 불충분(총 필요자금 대비 1,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)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 □ 2011년 6월, D&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· 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o 2012년 2월,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림 □ 2015년 9월 14일, 다야니家의 중재신청서 접수

2. 중재수행 과정

- □ 2015년 9월 14일, 이란의 다야니家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(578억원) 등의 반환을 한-이란 투자보장 협정을 근거로 청구하는 중재(Investor-State Dispute Settlement) 제기
- □ 2015년 9월 22일, 관계부처(국조실, 기재부, 외교부, 법무부, 산업부, 금융위) 합동 대응체계 구축
 - ◆ (관계부처 협의체) 국조실장 주재, 관계부처 차관보급으로 구성, 중요 의사결정
 - ◈ (분쟁대응단)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,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, 실무 전담
- □ 2015년 10월 6일, 관계부처 협의체 의결로 정부측 정부대리로펌 선정
 - ◈ (정부측)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(영국) 및 법무법인 율촌
 - ◈ (다야니축) Derains & Gharavi(프랑스) 및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(이란)
- □ 2015년 11월 26일, 중재판정부 구성

중재인	성명(나이, 국적)	경력
의장중재인	Bernard Hanotiau (68, 벨기에)	·벨기에 Louvain 대학교 교수 ·Hanotiau & van den Berg 변호사
정부측 중재인	Gavan Griffith (74, 호주)	·Essex Court Chambers(영국), Owen Dixon Chambers(호주) 변호사
다야니측 중재인	Philippe Pinsolle (50, 프랑스/스위스)	·Quinn Emanuel Urquhart & Sullivan(미국) 파리사무소 대표변호사

□ 2016년 3월~2017년 10월 , 서면 제출, 심리(Hea	ing) 진행 등
---	-----------

□ 2018년 6월 5일, 중재판정

3. 취소소송수행 과정

□ 2018년 7월 3일, 정부는 영국고등법원에 취소소송 소장 접수
< ※ 취소사유 : 영국중재법 제67조 >
① 다야니 家의 중재신청 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*(39개 금융기관들) 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, 한-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 이 아님
* 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,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음
② 다야니 家는 싱가포르 법인인 D&A 에 투자 를 하였을 뿐 한국 에 투자 를 한 것이 아니어서 , 한-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음
③ D&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-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
◈ (정부측 대리인)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(영국) / Peter Turner(QC), Ricky Diwan(QC) ◈ (다야니측 대리인) Gresham Legal(영국) / Ali Malik(QC), Cameron Miles
* 법무법인 율촌은 한국법 검토, 자료 수집 등 역할 담당
□ 2018년 7월~9월 , 소장 송달 절차 진행
□ 2018년 10월 , 양 당사자 준비 서면 제출
□ 2019년 2월, 취소소송 일정 확정
□ 2019년 7월~11월,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진행

□ 2019년 12월 20일, 판결 선고